

<부록 2> 지역 개발 및 지원법 관련 Q&A

① 지역개발계획 관련

1. 지역개발계획 변경 시, 기존 국비 지원사업을 축소·폐지(감액)하고, 증액이 필요한 기존 국비 지원사업에 사용(증액)토록 변경 가능한지?
→ 축소·폐지, 증액 필요사업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·군별 국비지원 총액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
2. 지역개발계획 변경 시, 기존 국비 지원사업을 축소·폐지(감액)하고, 감액된 금액을 신규 국비 지원사업에 사용(증액)토록 변경 가능한지?
→ 축소·폐지, 신규사업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·군별 국비지원 총액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
3. 사업시행자 지정, 토지수용을 위한 토지 매입, 동의 요건 충족여부 산정 시 국·공유지 제외 여부?
→ 국·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
4. 부칙 제5조 단서조항에서 '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'한 경우, 법 제18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조항에서 '공사 또는 사업 착수' 대한 해석은?
→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시작 행위(착공신고, 건축물 철거·멸실신고 등), 공사를 위한 준비(공사감리계약 등), 착공 가능한 수준의 토지 확보(공사에 즉시 착수 가능한 경우) 등 공사사업의 착수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
5. 부칙 제5조 단서조항에서 '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'의 구체적인 의미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?
→ 동 조항은 종전 법률인 지균법 또는 신발전지역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

중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

- 따라서, '15.1.1. 기준으로 중전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경우*, 중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신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
* '12.1.1.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

6. 중전법에 따라 지정되었던 개발촉진지구는 신법 시행에 따라 어떻게 되는 것인지?

→ 중전 지균법에 규정되어 있던 개발촉진지구 등 중전 지구·구역은 신법 시행에 따라 유효하지 않으며,

- 신법 시행 당시 중전의 지균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개발촉진지구, 특정지역, 지역종합개발지구 중 '개발사업 대상 지역(단위사업)에 한정'하여 신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봄(부칙 제4조제3항)

* 중전 권역·지구·구역은 폐지되며,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바뀜

7. 중전 '지균법'에서처럼 개발촉진지구 지구계 내에서 단위사업을 신규로 추진 가능한지?

→ 중전 '지균법'의 개발촉진지구 등 지구계를 설정하는 권역 개념은 폐지되므로 중전 방식으로 사업추진 불가

-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
8. 이번에 지정된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나, 기존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신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?

→ 신법에서 규정하는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므로(법 제2조제1호) 낙후지역(성장촉진지역, 특수상황지역)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추진이 가능

9. 기존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관련 협의가 신법 시행일까지 진행중인 경우, 신법 시행 후 처리방법은?

→ 법적 근거가 '지역개발지원법'으로 변경되므로, 신청·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, 이미 검토·협의를 거친 사항의 경우에는 소관 기관과 협의하여 간소하게 처리 가능

10.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조세감면 등 지원혜택이 계속되는지?

→ 취득세·재산세는 '14년 이전(신법 시행 前)에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해 종전 감면 규정이 적용('15년까지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감면)되며, 경과조치*는 '15년 지특법 개정 시 결정

* '15년 일몰 규정이므로 재검토 후 개정 예정(안행부)이므로, 재검토('15.4월 예정) 시, '16년 이후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감면 경과조치 검토 필요

→ 법인세·소득세는 조특법 개정(개정안 국회 계류중, '15.1.1 시행) 前 개발촉진지구 입주기업에 종전 감면 규정(5년간 50%) 적용

→ '15년 이후 지정되는 사업시행자, 입주기업은 '지역개발지원법'의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조세감면 규정 적용

11. '15.1월 이후 국비지원사업 관련 개발계획 변경(사업비 증가) 시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지?

→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며, 사업간 조정은 가능하나 시·군별 총액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 승인

→ 신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, 시·군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 발굴·지원 가능

12. 성장촉진지역 내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낙후지역형 지역개발계획 재수립이 가능한지?

→ 낙후지역형 지역개발계획은 도 내 성장촉진지역 시·군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 가능하며, 모든 시·군에 동일하게 한도액* 적용

* 성장촉진지역 200억원(지역활성화지역 300억원)

13.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신규 사업 예산지원은 언제부터 가능한지?

→ '15년에 지역개발계획 승인 후, '16년에 신규 예산 지원을 신청한 경우(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과 시) '17년부터 예산지원 가능

○ 다만, 국비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

14. 신발전지역 등 기존에 예산 지원이 되지 않던 지구에도 예산지원 가능한지?

→ 신발전지역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신규 낙후지역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,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 가능토록 기재부 협의

→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신규 거점지역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,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 가능토록 기재부 협의

② 지역활성화지역 관련

1.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 지역의 차이

-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성장촉진지역 시·군이 해당되며, 지역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시·군 중에서 30% 범위 내 선정(도지사)
-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는 시군은 일반 성장촉진지역 시군 평균 지원 사업비의 50% 추가 지원, 공모방식의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·대중교통 운영지원 등 차등 지원

2.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기준 및 절차

- ‘지역활성화지역’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평가선정
- 도지사는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

3. 특수상황지역(접경지역) 시군 포함여부

- 현재 균특법에 의한 지원체계하에서 특수상황지역은 안행부에서 국비 지원되므로 ‘지역활성화지역’ 지정에서 제외
- 제도 운영과정에서 안행부와 협의를 통하여 확대 검토

4.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

-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활성화지역의 사업을 우선·차등 지원,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, 대중교통 운영지원

5. 지역활성화는 왜 30%(22개 지역)만 지정하나

-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지정하도록 규정(법제67조)
- 신활력지역(‘04), 성장촉진지역(‘09), 개발촉진지구(‘94) 등 대부분의 정부 낙후지역 지원제도가 30%를 기준으로 운영

6.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시 공통지표만으로 선정이 가능한지

→ 특성지표는 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표이므로 공통지표만으로 선정이 가능함

7.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이유

→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업 준공시까지 소요되는 기간(개축사업 평균 소요 : 7~8년) 등을 고려

○ 다만, 지역활성화지역이 성장촉진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사업의 국비지원은 지역위.기재부 등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

③ 투자선도지구 관련

1. 투자선도지구 지정요건 중 총 투자금액 산정시, 민간투자 금액만으로 산정하는지?

→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신청한 사업구역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(공공+민간 투자액 합산)

2. 투자선도지구 지정요건 중 총 투자금액 산정시, 일부 기 투자된 금액이 있는 경우, 신규투자 금액만으로 산정하는지?

→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신청한 사업구역에 기 투자된 금액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(기 투자액 + 향후 투자액 합산)

3. '15년 시범지정은 기존 '지균법', '신발전법'의 개발계획 등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의제된 사업(기존 사업)만 신청가능한지?

→ 기존 사업 외에 신규사업도 추진 가능

○ 다만, 신규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시범지구 선정 후 투자선도지구 지정까지 시간이 다소 오래 소요될 수 있음

4.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개수는?

→ 최소 3개소 이상으로 하되, 11월 지자체 투자선도지구 추진계획 검토를 거쳐 개수 결정

④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관련

1.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기존 지원방식을 변화시켜 연계 되는 기대효과와 지자체 입장에서의 혜택은?

→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모방식을 통해 소규모 창조융합사업(H/W+S/W)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,

○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및 국비지원 효과성 제고 가능

→ 또한, 기존 성촉 지원방식은 성촉지역 70개 중 개발계획 사업기간이 완료된 43개를 제외한 27*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나,

* 성촉재지정('14.9)을 통해 신규로 포함된 무안·정선군 포함시 29개

○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성촉지역 70개 시·군 전부를 대상으로 하므로, 지원이 완료된 지자체도 사업신청이 가능하여 낙후지역 활성화에 기여

2. 공모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, 어느 사업이든 신청 가능하다는 뜻인지?

→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은 네거티브 공모방식이므로, 원칙상 모든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,

○ 타부처 사업과 중복*되거나, 보조금법 등에서 지원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지원불가

* 중복여지가 있더라도 소규모 예산지원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 제외

- 따라서, 공모사업 신청시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지원제외 대상사업 해당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제출하면 선정될 가능성 큼

3. 기반시설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동시에 지원한다고 하면서, 최대 지원규모를 3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너무 과소한 것 아닌지?

→ 그간 성촉지역에 지원된 소규모 사업은 10~30억원 규모이며, 이를 고려해 최대지원규모를 30억원으로 설정

- 다만, 최대 지원금액(30억원)은 가이드라인일 뿐, 신청사업규모가 부득이하게 30억원이 넘더라도,
- 사업내용이 충분히 창의적이고 타당하다면, 최대 국비지원 금액 수준을 조정할 계획

4.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는?

- 평가의 객관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당 점수를 부여하고,
-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에 연구기관·학계·공공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
- 또한, 선정절차상 경합이 예상되는 사업에 한하여 선정위원회에서 현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,
- 사업을 신청한 모든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

5.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을 지역활성화지역에 한정하는 이유는?

-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은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
- 이와 관련하여, 지역개발지원법 제70조에서는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
- 이에,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는 지역활성화지역에 한정하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실시

6. 평가 기준 중 감점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?

- 집행평가 결과
- 지역개발사업 평가 중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평가 결과를 토대로, 최하위 등급(D등급)*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대해 -2점 감점

< 단위사업 집행평가 평가등급 >

평가등급	S(탁월)	A(우수)	B(보통)	C(미흡)	D(부진)
전체 평가대상 대비 배분비율	10%	20%	40%	20%	10%

→ 보조금 부당사용 여부

-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부당사용한 경우, -3점 감점

→ 평가서류 제출 협조도

- 공모과정에서 정해진 기한내 평가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 -1점 감점